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출장명 : 2015 반부패 · 청렴 국외연수 참가)

1. 출장개요

분 류	운영지원	통제번호	수시(예산)-15-09
출장목적	2015 반부패 · 청렴 국외연수 참가		
출장국/장소	오스트리아/IACA 등	출장기간	'15.6.10. ~ 6.18.
출 장 자	소 속	직급	성 명
	감사실	책임관리원	○ ○ ○

2. 반부패 교육훈련 일정(일정, 기관/업체, 업무내용 등)

일자	교육 내용	비고
6.10.(수)	▶ 인천 출발(12:45) → 프라하 경유(18:40) → 비엔나 도착(19:35) ※ 약 12시간 소요	
6.11.(목)	▶ <Session 1> ① Overview of Corruption in Today's Environment ② International Efforts to Curb Corruption (The UNCAC)	IACA
6.12.(금)	▶ <Session 2> ① Public Procurement, Vulnerabilities and Best Practices ② Comparative Studies on Codes of Conduct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③ Excursion to UNODC/Vienna International Center (VIC)	IACA UNODC
6.13.(토)	▶ 국제기구 반부패 정책의 개별기관 적용 방안 강구	
6.15.(월)	▶ <Session 3> : Excursion to Public Prosecutors' Office for White-Collar Crime and Corruption (WKStA)	WKStA
6.16.(화)	▶ <Session 4> ① Fraud Prevention (I) Tools and Concepts ② Fraud Prevention (II) Tools and Concepts ③ Excursion to the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IACA IOI
6.17.(수)	▶ <Session 5> ① Organisational Integrity (I) ② Organisational Integrity (II) ▶ 비엔나 출발(18:40)	IACA
6.18.(목)	▶ 인천 도착(11:50) ※ 약 10시간 소요	

※ IACA(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UN부패방지협약 등 일련의 국제반부패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반부패분야의 연구 및 교육 · 훈련을 담당하는 기구

3. 주요 접촉인물

기관/업체명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비고
IACA	Elena Hxxxxx	Academic Course Director	-	
IACA	Martin Kxxxxxx	Dean	-	
IACA	Scxxxxxer	Managing Director	-	
IOI	Käxxer	Secretary-General	-	
WKStA	Wxxxxxxnig	Federal Prosecutor	-	
IACA	Jxxxxxm Yxxg	Senior Academic Expert	-	
IACA	Gaxxele Dxxxe	Consultant AML & Fraud (Lawyer)	-	
IACA	Jxxxxn Maxxxlck	Vice-Dean Researcher	-	

4. 출장성과(주요 교육 수강 내용)

가. 현대 세계에서 부패(Corruption in Today's World)

- 부패개념의 확대
 - 국제기구 또는 각국보다 “부패”에 대한 정의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점점 공적 영역에서부터 사적영역으로의 확대 경향을 보임
- 현대사회 부패 비용(What Is the Cost of Corruption Today?)
 - 매년 전세계적으로 1조달러가 뇌물로 사용
 - 외국 원조금의 약 70%, 기부금의 약 30%가 횡령되고 있음
 - 개발도상국 경제의 5천 억 달러가 불법자금으로 사용

※ 그리이스에서의 부패비용(강의자료 인용)

The Cost of Corrupt “Services” in Greece (TI-Greece, 2010)

	Type of Service	From	Up to
Public Hospitals	Surgery	€150	€7.500
	“Fakelaki” (Doctor’s bribe)	€50	€1.500
Tax Offices	Arrangement for books closing	€300	€15.000
	Arrangement for tax debits	€100	€3.500
License – Construction Bodies	Construction license	€200	€9.000
	Speed-up process	€500	€1.000
Private Health Services (Hospitals, Clinics)	Surgery	€250	€15.000
	“Fakelaki” (Doctor’s bribe)	€500	€6.000

○ 부패의 사회적문제

-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내전 발생 가능성을 높임
- * 부패가 높아질수록 평화지수가 낮아짐

※ 러시아에서 부패행위에 관여된 경우에 느끼는 감정에 대한 설문 결과(강의자료 인용)

Q: What Do You Feel After Participating in a Corrupt Deal?
(Russia, INDEM, 2004)

Answers	Frequency
Humiliation	32.5
Hatred towards the system of government that puts people in these circumstances	32.5
Feel nothing, already accustomed to it	24.1
Hatred towards any corrupt system of power	14.5
Satisfaction that I was able to force an official to do what I needed him to do	12.8
Satisfaction with my own ability to solve my problems	11.7
Hatred towards the corrupt official	11.2
Cannot answer	8.8
Emptiness	7.9
Shame	7.1
Despise myself	3.4
Other	2.9
Fear that this may become known to my friends who will condemn my action	2.2
Fear that I may be caught	1.4

○ 부패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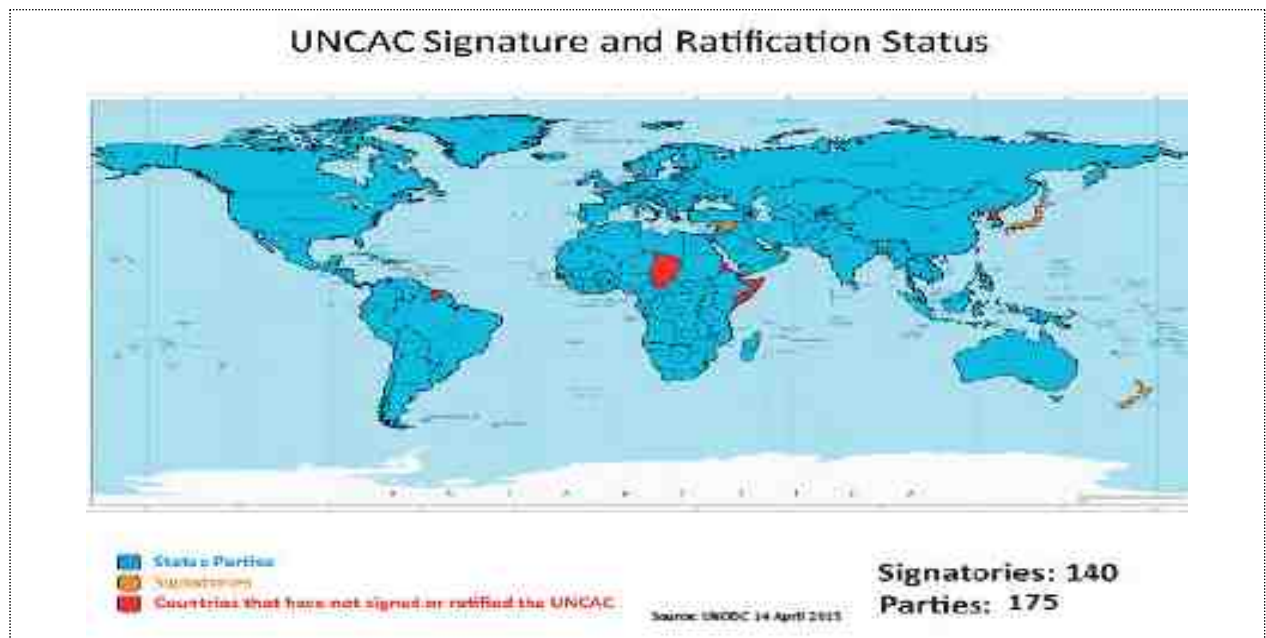
- 전세계적으로 부패 예방 강조
- 부패에 대한 대응 : 부패예방 → 엄격한 법집행 → 교육

< 부패연구 결과 >

- 정부에 문제가 있으면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으면 정부에 문제가 있음
 - 정부의 깨끗함은 부패의 척도가 됨
 - 부패와 기업 활동은 연관성이 높고 부패가 낮으면 기업 활동하기가 좋음
 - 기업 활동이 힘들면 부패가 만연한 경향을 보임
 - 한국은 80개국 중 5위(상위권)로 기업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부패에 관한 지수 : 경쟁력(Competitiveness Rankings)
 - 경쟁력을 갖추려면 부패를 낮추어야 하나 좋은 법만으로 부패를 낮출 수는 없음
 - 경쟁력과 부패는 정반대에 있음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부패예방, ② 법집행, ③ 교육을 해야 함
- ⇒ 예) 1992년 이탈리아 마니폴리테(깨끗한 손)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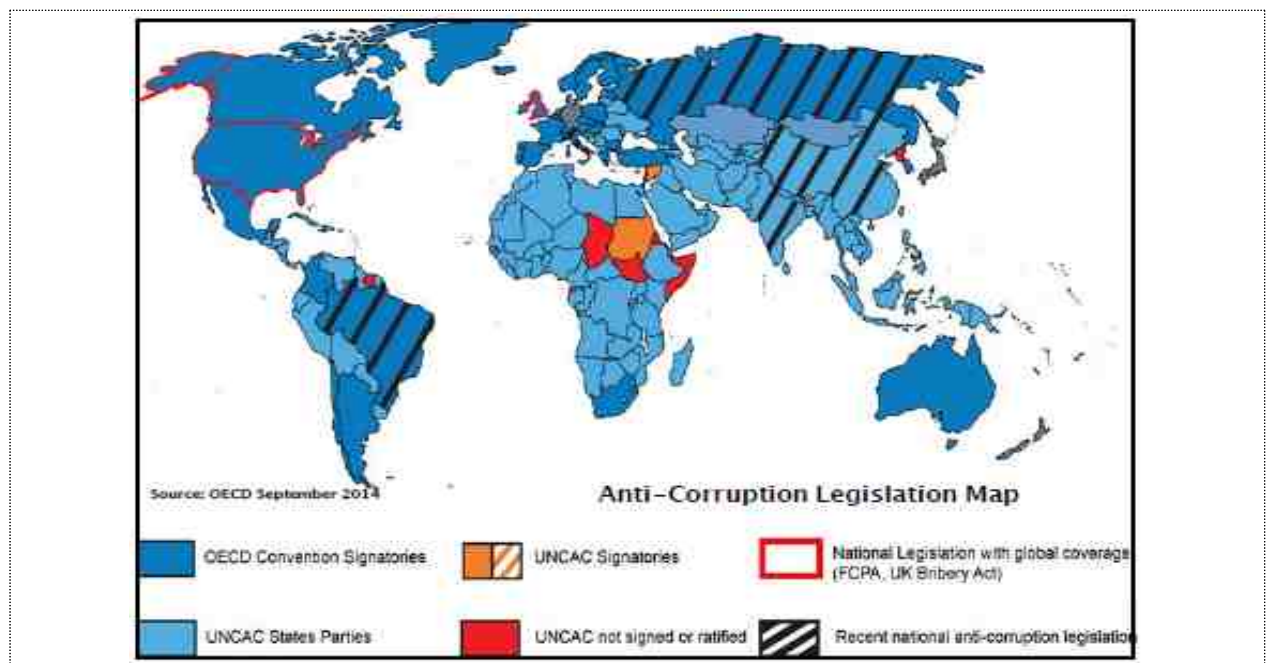
나.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International Efforts to Curb Corruption, The UNCAC)

- 부패 척결을 위한 4가지 원칙
 - 예방과 교육, 억제/준수, 엄격한 법집행, 국제적 협력
- 유엔반부패협약(UNCAC-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UN 반부패협약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총 8장 71개 조항
 - 제1장(총칙) : 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 제2장(예방조치) : 부패방지정책 수립 및 이행, 부패방지기구 설립, 공공부문의 노력 촉구, 공무원행동강령, 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사법부 및 소추기관의 부패방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사회의 참여, 자금세탁방지
 -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민간부문의 부패, 법인의 책임, 신고자 등의 보호
 - 제4장(국제협력) :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법집행 협력
 - 제5장(자산회복) :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재산의 직접 회복 물수를 위한 국제협력, 자산의 처분과 반환
 - 제6장(기술지원과 정보교환) :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교환·분석
 - 제7장(이행체제) : 협약당사국총회, 사무국
 - 제8장(최종조항) : 분쟁해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 UN 반부패협약 서명 및 비준국가(강의자료 인용)



* 특이한 것은 일본은 서명은 하였지만,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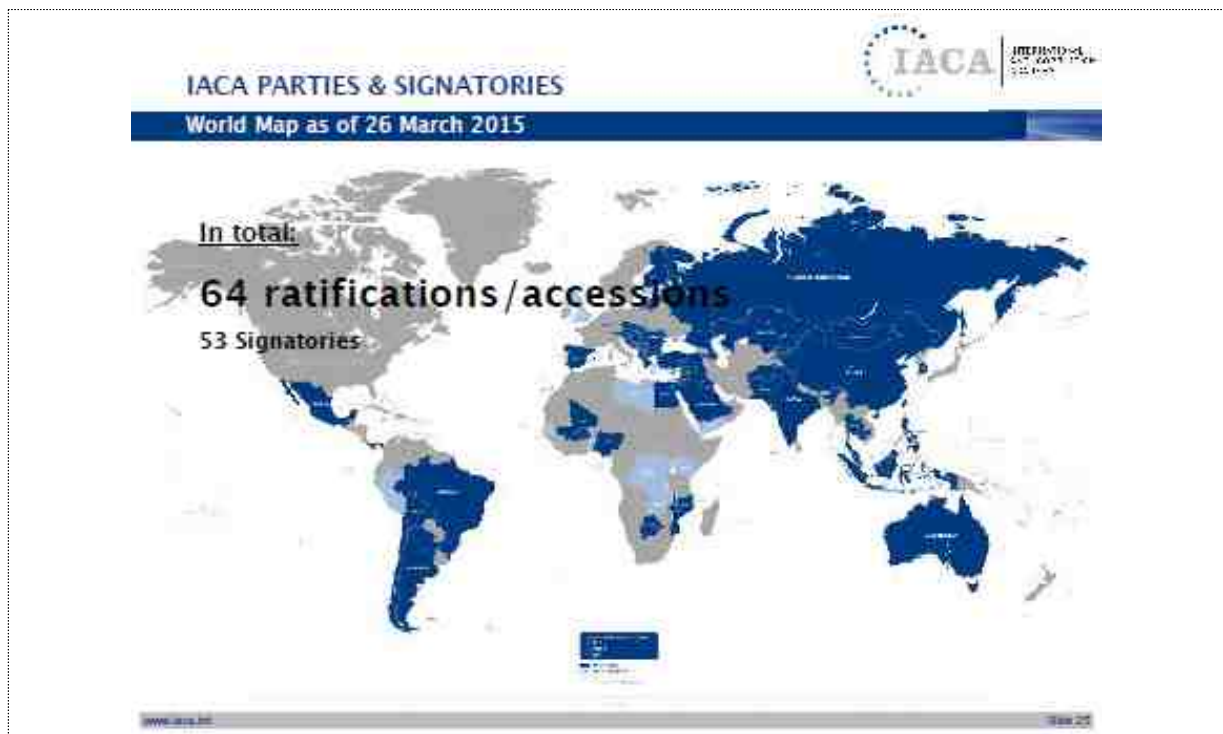
- 유엔반부패 협약의 역사
 - '03. 10. 31. UN 총회에서 협약 채택
 - '03. 12. 9.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 서명회의 개최
 - '05. 12. 14. 정식 발효(30개국 비준 동의)
 - '06~'13년까지 5차에 걸쳐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 * 1차('06.12, 조던), 2차('08.1~2, 발리), 3차('09.11, 카타르), 4차('11.10, 모로코), 5차('13.11, 파나마), 6차는 '15.11, 러시아 생테크부르크 예정
- 이행점검 메카니즘(Review mechanism)의 도입(3차 당사국총회)
 - UN 협약 중 유일한 메카니즘으로 175개국이 서로 감시하는 원리
 - 작동원리 : 각 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pool을 구성하고 1개 국가당 다른 2개국에서 이행점검하여 미이행에 대해서는 제재
- * 국가별 이행점검을 할 다른 2개국은 제비뽑기로 선정
- 세계 부패 방지 법률제정 현황(강의자료 인용)



- * 미국(FCPA)과 영국(UK Bribery Act)의 경우 국내법이지만 국제거래에도 적용되므로 그 영향은 국제적 특징을 가짐. 즉 해당국 내적으로 반부패사건으로 연루되어 문제가 있는 기업은 미국 및 영국으로의 수출에도 제한적 요소로 작용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2011. 3. 8. 국제기구 지위 획득
- 목적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으로 부패 근절 촉진
 - 부패방지 교육 및 전문 훈련 제공
 - 부패의 모든 양상에 대한 연구 촉진
 - 부패 척결을 위한 기술 지원 제공
 -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
- 활동 : 세계 및 지역수준의 부패 분야에서 문화적 다양성, 양성평등 등을 고려하여 학문의 자유원칙을 준수하며 높은 학문과 전문 기준을 충족하고 종합적이고 학문적 방법으로 부패 현상 해결
- IACA 서명 및 비준국가(64개국)(강의자료 인용)



다. 공공조달 분야의 반부패(Anti-Corruption in the Area of public procurement)

○ 공공조달의 개념과 규모

- 공공조달의 개념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구매, 용역·공사 발주 시 조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경쟁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업체 물품 구매나 용역·공사를 시행

-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GDP의 15% ~ 30%를 차지
 - EU 공공조달 시장은 GDP의 18%(12년 2,400 십억 유로)
 - 미국 시장(2012년 450 십억 달러)

○ 공공조달 부패 비용 및 취약분야

- 공공조달에 있어서 연구결과 공공계약의 20~25%의 가치가 부패로 상실
 - EU는 회원국의 부패비용이 매년 120십억 유로에 이른다고 추산
- ※ 출처 : EU 위원 맘스툼, 2013.5월, 반부패 세미나 스웨덴 괴테보르크
- 취약분야 : 공공공사(도로, 터널, 공항), 제약, 의료 장치 등

○ 공공조달의 진행단계(입찰전, 입찰, 입찰후 3단계)

- 입찰 전 단계
 - 공공조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고
 - 정부 요구 범위의 결정 : 물품·공사 등의 종류와 품질 요구수준 결정
 - 계약 진행절차의 구조화 : 입찰 진행일정, 단계별 절차, 적격 응찰자제한, 의사소통 방법등 구조화
- 입찰 단계
 - 입찰공고(입찰문서)
 - 제안서 접수 계약상대자 결정(입찰자와 제안서 평가)
 - 계약체결(수립된 조건에 따라 체결)
- 입찰 후 단계
 - 효율적 이행을 위한 계약 감독

○ 공공조달의 추진방법

- 공공조달 추진방법 선정기준
 - 사전 공시를 여부, 분할발주 및 통합발주, 협상여부 등 결정
- 공공조달 세부항목 기준 결정
 - 추정계약가격, 응찰자의 수, 적정 재화, 용역, 공사의 복잡성
- ※ 공공조달 세부항목을 결정이 부패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음
- 공개경쟁입찰
 - 정형적인 형태의 기본적인 조달방법으로 해당분야 기업을 모두 입찰가능하며, 낙찰은 보통 최저가로 결정되므로 공공조달 추진방법 중 가장 투명하고 경쟁적인 요소가 강함
 - 입찰서는 상세한 사양과 계약문구를 포함하고 협상은 허용되지 않음

- 제한경쟁입찰
 - 사전 공고를 통해 자격을 정하고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이 참여
 - 적격자 선정은 최소한 또는 선택된 요소의 조건에 의하여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문사항이 특별하고 복잡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공조달기관과 입찰참여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

※ 국내 법규상으로는 전문성과, 기술성 등의 조건을 요구함

- 단일공급자(독점 조달)
 - 거래금액이 작거나, 시급한 경우 또는 특허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입찰 방법으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독점조달 방식을 실시
- ※ 국방 분야에서 첨단무기 도입 등에서 자주 사용 됨.

*** 단일공급자 결정으로 인하여 부패발생 위험이 가장 높음**

○ 공공조달의 주요 부패관여자

- 뇌물 공여(제공)자
 - 응찰자(기업), 컨소시엄 파트너, 하도급자, 공급자
- 뇌물 수수(받는사람)자
 - 공공조달 발주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간부공무원으로서 공공조달 진행 절차에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한 공무원
- 발생원인 : 공공조달 입찰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기 위하여 뇌물제공 등을 통해 혜택을 받기 위해 부패행위 발생
- 공공조달 기관의 공무원이 연루되지 않는 경우에도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입찰 당사자들 끼리 담합을 통해 입찰가격을 조작하는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공공조달의 국제적인 부패방지 장치

- 국제상거래위원회 모델법
 - 정부가 사용가능한 구속력 없는 모델로서 국제적 우수사례에 기초
- WTO 정부 조달 협약
 - 공공조달을 국제 무역에 개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WTO와 40개이상 WTO 가입국에 구속력 있음
- EU 공공조달 지침 : 국가법으로 적용하며, EU 법적 일치의 일부임
- UN 반부패 협정 : 국가 공공조달 규제 구조화의 뼈대를 제공

○ 공공조달의 부패방지를 위한 필요장치

- 좋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
- 법정 또는 독립기관에 의한 효율적 감독 매커니즘
- 도덕적 행위에 대한 규제 준수 프로그램
- 부패행위자는 공공조달 계약에서 제외
- 조달인력의 전문화

○ 공공조달 부패방지를 위한 중요원칙

- 투명성 확보

- 모든 대상자에게 조달기회를 제공하고 공고를 통해 준수사항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진행결과를 공개
- 진행 단계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부정한 자에 대한 처벌
- 조달 절차를 이해관계자가 모니터 할 수 있게 하라
-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불이행이 적발된다는 것을 보장하라
- 속이거나, 차별적인 조달 결정이 어렵게 하라

- 경쟁강화

- 공공조달 시 둘 이상을 응찰자로 하여 경쟁
- 지불하는 돈에 대한 최고의 가치확보를 위한 핵심요소
 -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품질
 - 혁신을 위한 주요 동인

- 객관성 확보

- 객관성은 편향, 편견 주관적 평가를 줄이는 의사결정의 목적
- 비차별, 동등한 대우, 진실성(윤리적 행동),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독 체계

⇒ 공공 조달 시스템은 투명성, 경쟁, 객관성에 달려있음

○ 검토 메카니즘

- UNCAC 제9조

- 만약 UNCAC 9조 1항에 근거한 규칙이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법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달의 합당한 시스템이 효과적인 항소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검토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요구
 - UNCAC는 국내 검토시스템의 효력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음
 - 효과 있는 해결 메카니즘은 무차별, 투명성, 경쟁을 달성(보증)하기 위한 초석(부패예방)

- 해결책의 필요성
 - 해결책은 규칙이 지켜지는 것을 보증한다. 반대로 불이행이 확인되거나 언급될 수 없음
 - 해결책은 조달업체(국제 또는 국내)가 공공조달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조달 규칙 집행을 허락
 - 효과적인 검토 메카니즘이 없는 공공조달 시스템은 쓸모없음

○ 효과적인 해결시스템의 공통 요소

- 검토위원회
 - 조달업체 제고 요청(검토위원회 이전 절차진행 전)
 - 독립적인 위원회에 의한 검토신청은 반드시 경청
→ 조달업체로부터 독립
- 논쟁이 가능한 결론
 - 조달업체에 의한 어떠한 결정과 행동 ?
 - 오로지 논쟁이 가능한 결론 ?
- 해결책의 유형
 - 임시적인 방법은 바꿀 수 없는 상황(특히 공공계약을 발효시키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임시적인 해결방법
→ 특히, 조달업체 결정의 실행정지
 - Set aside는 증명된 불법을 막기 위한 목적
→ 특히, 무효선언 또는 조달업체의 불법적인 결정의 긍정적인 수정
 - 피해보상은 PPL 위반에 의해 피해당한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 피해가 대체가능한가?/ → 피해보상 규모의 한도는?

※ 공공조달에서의 단계별 부패 리스트(강의자료 인용)

입찰 전 단계	입찰 단계	입찰 후 단계
• 수요 없는 입찰 • 쪼개진 계약들의 합산 • 합법의 제단과 한 회사만의 기준 선택 • 불합리한 시간제한 • 이익충돌의 무감독 • 해명 요구에 대한 모호한 답변 • 부정당 업체 참가여부 • 입찰참가업체의 공개 • 불합리한 서류	• 부정당한 수의계약 • 특정 업체의 기술 또는 기준 제단 • 모호한 양 • 명확하지 않은 계약 • 불합리한 시간제한 • 입찰목록의 공개 • 협상금지에도 불구하고 협상여부 • 차별적인 계약협상 • 부정당업체 참가여부 • 최저한/적정가 업체와의 계약하지 않은 사례 • 불합리한 서류	• 계약이행 중에 계약자에게 부정당한 처벌 • 입찰참가 업체(컨소시엄 업체/하청업체)에게 부정당한 처벌 • 품질보증의 생략 • 부적절한 계약실행 또는 미 실행 경우에 대한 미 조치 • 부정당한 비용/미 시행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 • 불합리한 서류

라. 행동강령의 비교연구(Comparative Approach to Code of Conduct)

○ 행동강령의 개념

- 국제법 : 국가간의 합의로서 특히 국제기구 내에서 통일적인 행동의 표본을 마련하는 데 이용되는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
- 일반개념 : 조직 구성원의 행동의 표본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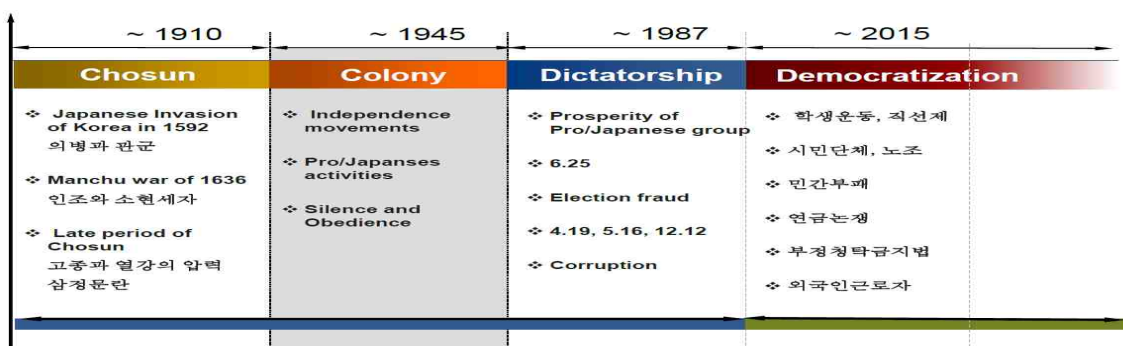
○ 공무원행동강령

-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 대통령령으로 제정 (2003년 2월 18일)
-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규범
- ※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각 기관은 자체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담고 있음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 ※ 기품원은 처음에는 『윤리경영행동지침』이라는 명칭으로 2003년 8월 25일 제정시행되었다가 2006. 2월 기품원 출범 후 2006년 6월 8일에 『국방기술 품질원 임직원 행동강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전면보완되어 제정 시행

○ 대한민국의 청렴정책 및 청렴도

- 청렴정책 운영 현황
 - 해외 국가 및 기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공직자행동강령 등 공직자 윤리규범은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음
 -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순위는 2009년 39위 기록한 이래 2013년 46위, 2014년 43위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
- 원인
 -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차원에서 논의를 해볼 수 있음
 - 사회적 인식의 원인을 살필 필요

○ 대한민국 공직사회 신뢰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강의자료 인용)



- 시대별 공통점 :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음
 - 관 보다 민간을 중심으로 환란을 극복함 (임진왜란, 독립운동)
 - 정부에 대한 신뢰 조성이 힘든 환경 (일제강점기, 개발독재)

○ 시사점

- 청렴정책의 지속적 수행 필요
 -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가·국민간의 신뢰 필요
 - 이를 위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 향후 전망
 - 청탁금지법 시행은 특권과 성역 없는 청렴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
 - 공직사회부터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면 민간 영역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

마. 사기방지(Fraud Prevention)의 방법(Tools)과 개념(Concept)

○ 사기(Fraud)의 개요

- 사기의 법적 정의
 -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손실을 야기하는 것
 - 사기에 있어서 이익이란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이익(특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 내포

※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법조항 분석으로 그 나라의 주요 범죄 형태를 알 수 있음

○ Fraud의 형태 : 다양한 형태로 발생

- 위조, 횡령, 조달과정에서 부패, 문서조작, 자금세탁, 비자금 조성 등

○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Fraud 형태

- 세금 : 탈세
- 계약 : 계약 전과정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음
- 사회보장 : 연금, 의료보험, 실업수당, 출산수당 등
- 공공보조금 : 문서위조 등을 통한 보조금 지급 등

○ Fraud Triangle(사기 발생의 3요소)

- 동기(Motive)
- 기회(Opportunity)
- 합리화(Rationalization)

○ 사기(Fraud) 위험관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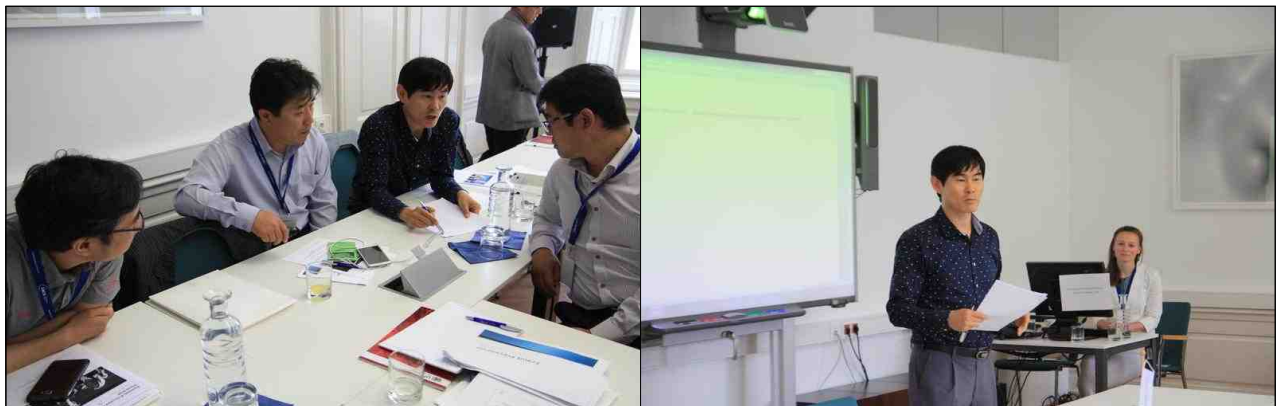
- 사기 위험 평가(Fraud Risk Assessment)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사기 방지 조치(Prevention)
 - 예방을 위한 절차 및 가이드라인, 행동강령 마련
 - 위험성 직무는 순환보직, 직무를 분리 및 견제 역할 부여
 - 위험신호 관리, 모니터링, 상급자의 확인
 - 행동강령 및 그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화
 - CEO의 사기 예방 의지, 조사·감사의 인적·물적 지원
 - 내부신고 시스템 구축
- 사기 적발 메커니즘(Detection)
 - 내부신고 시스템
 - 감사, 사고분석, 내외부 보고서
 - 민간부문에서의 혐의거래 보고(STR)
- 제재(Sanctioning)
 - 형사처벌 등을 고려 충분한 증거 확보, 징계 처분에 대하여 공개, 벌금, 환수, 계약해지 등

○ 제재 미흡 시 문제점

-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기업 이미지 훼손
- 직원의 사기 감소
- 투자자, 공급업체, 고객의 불신 및 비용 증가

* **Fraud**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

○ 분임토의(사례 :스페인 국왕 딸/사위가 관련된 Case 및 남미국가 정부 고위관료 부패 사례)



[Session4] 사례연구 토의모습 및 발표 모습(1조)

바. 조직차원의 청렴성(Organisational Integrity)

○ 윤리·청렴 등에 관한 몇 가지 정의

- 윤리 : 일상적인 행동을 이끌어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가치와 규범
- 청렴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가치와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
- * 부정·부패 회피 이상의 것 및 윤리적 딜레마에 양심적으로 대처하는 것
- 윤리적 딜레마 : 윤리적 가치가 상충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각각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대안들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 윤리경영 :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윤리적 행동을 보장하는 수단

○ 윤리경영에 관한 두 가지 접근법

- 규칙 기반(Rules-based) 접근법과 가치 기반(Value-based) 접근법

규칙 기반(Rules-based) 접근법	가치 기반(Value-based) 접근법
- 비윤리적 행동 회피 - 인간 본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 - 구성원에 대한 통제 강조 - 전형적 수단 : 법률, 엄격한 행동강령, 엄격한 절차	- 윤리적 행동 촉진 -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 관점 - 구성원 스스로에 의한 통제 강조 - 전형적 수단 : 워크숍·교육, 의욕적인 행동강령, 개별 지도

- 두 가지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적절히 조화시켜 적용할 필요

* 규칙 기반 접근법은 비윤리적 행위 예방에 효과적이며 가치 기반 접근법은 구성원의 윤리적 딜레마 대처 지원에 효과적. 그 반대도 성립

○ 청렴경영 체계

- 수단(Instruments)

< 4개 기능, 2개 층(layer), 2개 접근법 >

4개의 기능	- 청렴성 결정 및 정의(예: 위험 분석, 행동강령, 선물·향응정책) - 청렴으로의 유도(예 : 교육, 지도, 소통, 윤리적 리더십) - 청렴 감시(예 : 내부신고자 정책, 일상점검, 설문조사를 통한 측정) - 청렴 강제(예 : 비공식적 제재, 징계절차)
2개의 층	- 핵심 수단 - 보완 수단
2개의 접근법	- 규칙 기반 - 가치 기반

< 3개의 축과 2개의 층(layer) >

구분	수단	절차	구조
핵심 수단	- 강령, 규칙, 지침, 청렴 훈련 및 권고	- 지속적인 청렴 개발 과정, 일회성 계획들	- 청렴 담당자, 경영진
보완 수단	- 인력 선발 및 승진 기준 으로서의 청렴, 조달에 있어서의 청렴 등	- 인력 관리, 조달·계약 관리 상 절차 등	- 인력 관리, 계약 관리, 재무 관리 담당자 등

- 규정화

- 위험분석 : 규칙 기반의 적극적·전향적 접근
- 딜레마 분석 : 가치 기반 접근으로 중요한 보완요소
-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자문 : 중요하긴 하나, 최종결정은 경영진이 해야 함

- 강령 제정

- 강령의 유형 : 규칙 기반 행동강령, 가치 기반 윤리강령, 두 강령의 조합
- 강령 제정 이유 : 명확성, 책임성 증대, 의무감과 성실성 촉진
- 강령 제정을 위한 지침
 - ▶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쉽게 기술
 - ▶ 더 이상 단순화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능하면 단순하게 기술
 - ▶ 가능하면 거의 흠결이 없도록 일반화·보편화할 것
 - ▶ 논리적 구조로 만들고, 개념 사용에 있어 일관성을 가질 것
 - ▶ 가능하면 규정 내에서 앞뒤 참조를 많이 할 것
 - ▶ 강령 내의 가치들 간의 순서를 고려할 것
 - ▶ 가치로서 '법률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 것
- 정기적 토론과 동료 간 재검토 등을 통한 명문화되지 않은 기준 확립
- 청렴 정의에서 고려해야 할 것
 - ▶ 직무 분리 및 순환
 - ▶ 이해 상충 정책 :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고 OECD 체크리스트와 같은 수단 제공
- 선물과 향응 정책
 - ▶ 원칙적으로 선물 수수를 금지하되, 선물수수 절대 금지가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좀 더 유연한 정책 필요
 - ▶ 단, 리베이트는 금지하고 모든 선물은 보고되어 관리되어야 함
- 공직 퇴직 후 재취업 정책

- 청렴 정의 시 구조적 보완수단

- ▶ 인력 관리(채용, 근평 및 승진 기준으로서 청렴 등), 조달 정책, 재무 관리, 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품질 관리

- 청렴으로의 유도

- 조직의 일상적 담화에 있어서 청렴 통합
 - 외부 소통(잡지, 웹사이트, 표적 메일 등)을 통해 청렴정책 공표
 - 공식적 내부 소통(사보, 인트라넷 등) 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정기 토론
 - 구성원 미팅, 감독관-고용인 간 개별 미팅에서 청렴 이슈 토론 제도화
 - 열린 소통문화 조성
- 청렴 지도 및 권고
 - 개별 지도(훌륭한 신입직원 모집과 적절한 지도자 훈련이 본질적)
 - 반(半) 독립제 설치(책임감 제거 위험 및 최후 수단으로서 유일한 권고 보장)
- HR 과정에서의 공정성 평가
 - 공정성은 청렴을 설명하는 결정적 변수

- 청렴 감시

- 수동적 감시(내부신고자 정책)
 - 스캔들이 되기 전에 문제 해결 목적으로 시행
 - 행위의 보고 채널과 보복에 대한 보호 필요
 - 기술적으로 숨겨진 위험요소는 잘 다듬어져야 함
 - 잘못된 고발 사례에 대한 대응장치를 포함해야 함
 - 윤리경영의 핵심요소가 아니라 필수 안전망임
- 적극적 · 능동적 감시
 - 개별적인 청렴 위반에 대한 적극적 조사
(관리자에 의한 일상적 감시 · 감독, 공식적 통제수단이며, 조기 경보 시스템임,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접적 · 사회적 통제)
 - 청렴 위반 및 청렴 딜레마에 대한 조직 차원의 면밀한 계획
(불만요인에 대한 체계적 등록, 설문을 통한 청렴 위반과 딜레마 측정, 구성원 사이의 윤리적 딜레마와 이슈에 대한 비공식적 탐지)

- 청렴 강제

- 사회적 통제나 일상적 감독의 결과로서의 비공식적 제재
- 공정하고 적절한 조사 및 제재 절차
- 청렴 위반에 대한 내 · 외부 소통에 대한 적절한 절차

○ 개발 과정(Development Process)

-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행 부족 극복, 초기 열정 감퇴 후 잔존, 최신 체계 유지 보증, 조직화 보증 측면에서 중요
- PDCA(계획 - 실행 - 점검 - 조정)에 따르는 것

- 조직화를 위해 청렴경영 체계 차원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발 과정이 중요
- 청렴경영 체계 소개와 같은 일회성 계획도 필요

○ 기관 내 구조(Structures)(강의자료 인용)

구분		청렴성 결정 및 정의	청렴으로의 유도	청렴 감시	청렴 강제
핵심 담당자	경영진	+++	+++	+++	+++
	청렴 담당자	+++	+++	+++	+++
보완 담당자	계약·재무관리 및 인사관리 담당자 등	++	++	++	++

- 경영진
 - 청렴경영에 관한 적극적 리더십
 - 청렴경영과 의사소통 시 청렴에 관심을 갖도록 충분한 수단을 보증하는 등 청렴경영에 대한 명시적 지원
 - 도덕적인 관리자
 - 비윤리적 행위를 바로잡고 구성원이 실수를 공개할 수 있는 열린 문화를 만드는 등 구성원들 사이에 청렴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상 노력
 - 도덕적인 사람
 - 정직, 신뢰, 모범적 행동 등 청렴에 관한 관리자의 개인적 특성
- 청렴 담당자
 - 전문 지식 축적, 조직화시키는 역할에 있어 경영진의 지원, 최초 정책 실시 후 연속성, 직무 표시, 가시성 등 제도화가 필수적
- 개인, 위원회, 실무단 등 많은 형태로 진행 가능하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청렴경영에 대한 공유 유지

○ 결론 및 시사점

- 윤리경영은 **내실없는 수사학을 넘어서야** 하고, **윤리경영 수단은** 업무 영역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져야 함
- 윤리경영은 **규칙 기반 접근법을 넘어서야** 하고, **청렴 위반 예방**만이 아닌 **공직자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대처도 지원**해야 함

5. 관련기관 방문

가. 국제옴부즈만협회(IOI)

- 일시 : '15. 6. 12.(금) 13:00~
- 강사 : **Mr. Kxxxxx** (Secretary-General, IOI)

< 국제옴부즈만협회(IOI) >

- ◆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 및 세계적 발전 도모 등을 위해 비영리법인(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설립(1978년)
 - 본 부 : 캐나다 Alberta에서 '09년 오스트리아 Vien으로 이전
 - 회 원 : 6개 권역 90개국, 171개 투표권 보유 회원
 - ※ 6개권역 :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태평양, 카리브.남미, 유럽, 북미
 - 회의체 : 총회(4년 주기) 및 이사회(연 1회)
 - ※ '16년 태국 방콕에서 총회 개최 예정
- ◆ 사무국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내에 설치
 - 사무국장 등 3명의 직원이 사무총장을 보좌
- ◆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14.7.2, 권익위)
 - AOA 이사회 및 IOI 아시아지역 총회와 연계하여 컨퍼런스 개최('14.7.2~3)
 - 한국 옴부즈만 성과의 국내외 홍보 및 발전 방향 모색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및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보드(AOB) 역할 및 기능
 - IOI는 1979년에 캐나다에서 설립되어 2009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전,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옴부즈만 역할 수행, 170여개 회원국 보유
 -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도 주요 회원, 총 6개 섹터로 구분.으로 되어 있음
 - 아시아지역에 권익위 이정보위원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음
 - IOI는 2009년 본사를 빈으로 이전한 후, 주요한 아젠다도 변경, 회원국 중심으로 훈련을 제공 및 지역 협력에 초점
 - 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경비는 각 회원국들의 회원 수입료로 경비 충당
 - 여러 가지 IOI 책자를 발간하고 연구를 수행,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음
 - 한편 IOI는 지역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옴부즈만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IOI에서 적극 제공하고 있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제공해서 보다 많은 회원들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필요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오스트리아 헌법에 의해 세워진 옴부즈만(AOD)은 입법부에 속해져 있으며 행정부에 대하여 명령을 할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모든 행정기관 견제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한을 보내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거나,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 역할은 독립적으로 행정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권리 보호와 향상, UN 조항에 따른 국내 예방 메커니즘 활동, 입법부에 건의, 의회에 조사·보고 등 수행
- 오스트리아 시민이 행정기관을 감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옴부즈만의 임기는 6년으로 의회에서 선출된 3명으로 구성되며(1번 연임 가능), 오스트리아 3명의 회원이 의회에서 활동결과 등을 보고하고 있고, 독립적 기능과 중립적 역할을 보장하며, 45명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IOI 활동 현황

- **주요활동 내역** : 교육훈련, 리서치와 보고서 발간, 지역보조금 제공, 국제협력 활동을 하고 있음
- **교육훈련**
 - 명성 있는 대학과의 협력 활동
 - 대학과 공동연구, 조사기법, 인터뷰, 대화법, 스킬 등을 연구
 - 장학금 제공
 - AOA(Asian Ombudsman Association)훈련 협력, 카리브회원들을 위한 IOI 부패방지 훈련 등 진행중
- **IOI 연구, 리포트 발간 및 홍보 활동**
 - 유럽 옴부즈만 협회에서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다각적·비교법적 분석 연구
 - 국제 옴부즈만 기준, 오스트레일리아 및 태평양 옴부즈만협회 연구
 - 현재 아시아 옴부즈만협회도 연구 조사 진행중
 - 매년 리포트를 작성하고, 'IOI의 히스토리'를 발간함
 - 그 외 TV를 통해 옴부즈만 활동을 홍보하고 있음.
- **지역 보조금 제공**
 - 지역별로 예산 지원
 - 캐리비안 및 라틴 아메리카 세미나 역량배양, 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 제공
 - 유럽, 북미 지역에서 소요되는 비용 제공
- **국제 협력**
 - 국제협력과 파트너십에 협력(IACA, AOMA, ILO, ICC, World Bank, ECOSOC 등)

- IOI 조사 및 책자 발간

- 유럽 옴부즈만 협회에서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다각적 · 비교법적 분석 연구
- 국제 옴부즈만 기준, 오스트레일리아 및 태평양 옴부즈만협회 연구
- 현재 아시아 옴부즈만협회도 연구 조사 진행중
- 그 외 매년 리포트를 작성하고, 'IOI의 히스토리'를 발간함

※ 현장 기록



[Session2] IOI(국제옴부즈만협회) 기관 방문

나. 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 전담 검찰청(WK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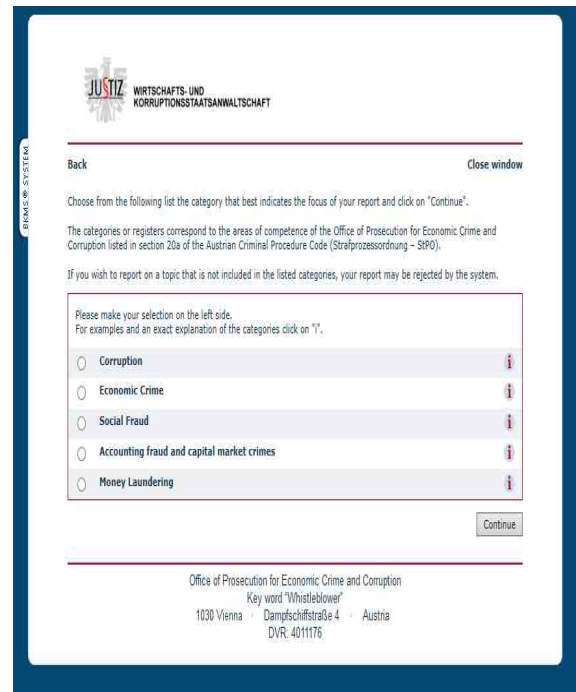
- 일시 : '15. 6. 15.(월) 09:00
- 강사 : Mr. Wxxxxxxig (Federal Prosecutor, WKStA)
- 기관 개요
 - 설립목적 : 경제범죄 및 부패 수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 검찰조직에 포함('09년)
 - 조직 : 소장 외 6개 팀으로 구성
 - 인력 : 검사 20명, 경제전문가(회계사) 5명, IT전문가 1명
 - ※ 향후 검사 40명을 목표로 점진적 확충 예정
 - 주요 기능
 - 부정부패, 경제범죄, 세금을 포함한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기소·상소
 - UN 반부패기구, EU 반부패 전담기구와의 협력
- 기관 연혁
 - 2009.1.1. :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으로 발족
 - 2011.9.1. : 중요 경제범죄까지 관할범위 확장
 - 2012.9.1. : 세금 및 사인 간 중요 금융범죄 까지 관할범위 확장

○ 권한(jurisdiction)

- 관할사건 : 3,000유로 이상의 능동적인 형태의 부패사건, 5백만 유로 이상의 경제범죄
 - * 일반 검경 수사 중 WKStA관할 사건으로 밝혀지는 경우 WKStA로 이관되어 수사
- 수사 및 기소 권한
 - 관련기관에 자료요청 및 수사지휘 권한 보유
 - 증권금융감독원, 연방 부패방지국(BAK), 재정부, 감사원, 회계사 등 유관부서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사
 -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권한

○ 공익 신고 웹사이트(<https://www.bkms-system.net/bkwebanon/report/>)

- 구축배경
 - 부패사건의 경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음
 - 내부고발을 확보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신고 시스템이 필요
 - * 독일 BKMS사에 개발 의뢰, 웹사이트 상에 whistle-blow system 개설
- 특징
 - 무기명 신고 (IP주소 수집 및 추적 불가)
 - 독일어/영어 2개 국어 제공
 - 6개 분야 : corruption, Economic Crime, Social Fraud, Accounting fraud and capital market crimes, Money Laundering
- 시스템 현황(강의자료 인용)



○ 감경·보호제도(Leniency Programme)

- 주요내용
 -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했을 경우, 검찰 고발 등을 면제해주거나,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
 - 부패사건 자수 시 기소유예하거나, 벌금 또는 사회봉사 명령
- 증인보호프로그램
 - 부패범죄 등 신고자나 증인에 대하여 보상, 보호 장치 마련

○ 주요 질의 및 논의사항

- 한국에서는 어떤 조직이 신설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담 조직이 설립된 계기는?
→ 경제범죄 증가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
- 신고자 보상 제도는 없는지?
→ 부패 신고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자 보상 제도는 별도로 있지 않음
- 부패사건 수사에 있어 상급기관 등 외부의 개입은 없는지?
→ 외부 개입은 없음. 다만, 외부에서 사건에 대해 개입 시 그 사건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있음

- * 기품원의 경우 부패신고시스템은 실명으로 하고 있는 내부공익신고 시스템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외부공익시스템 이중 운영
- * 외부에서 개입 한 수사 건에 대해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검찰 시스템을 통해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을 점검할 필요

※ 현장 기록



[Session3] 오스트리아 검찰청(경제 범죄 및 부패담당국) 방문

다. 유엔 마약범죄국(UNODC)

○ 일시 : '15. 6. 16.(화) 13:00

○ 기관 개요

- 설립목적 : 전 세계적인 불법마약유통, 범죄예방 및 범죄사범, 국제 테러와 부패에 보다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 (1997년)
- 조직 및 인력
 - 집행국장실 외 4개과 설치(기획집행과, 조약과 등)
 - 본부 외에 연락사무소(뉴욕, 브뤼셀) 및 21개 지역사무소
 - 운용인원 : 약 570명
- 주요 기능
 - 마약범죄예방
 - 부정부패 및 국제적 테러 방지 활동 등 수행

○ UN반부패 협약(UNCAC)

- 정치적 배경
 - UN의 「UN반부패협약」은 국가간의 반부패 및 청렴정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공론화한 최초의 움직임
 - 세계 최대의 반부패 규제규범으로 작동
 - * 본 협약이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서 가지는 정책적 의의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여 우리의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연혁
 - 행동강령 및 선언문 발표('96년)
 - 협약서 마련을 위해 '02년 1월부터 '03년 10월까지 UNODC 주관으로 7차례 임시위원회 개최
 - '03. 10. 31 : 제58회 유엔 총회에서 협약 최종안 채택
 - '03. 12. 9 : 멕시코 메리다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0여 개국 정부 대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UNCAC 서명회의 개최
 - * 우리나라는 UN부패방지협약에 서명('03.12.10)한 후, 협약의 이행입법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08.2.26)되었고, 이어「UN부패방지협약 비준동의안」국회 본회의 통과('08.2.29)

○ UN반부패 협약(UNCAC)의 주요 내용

- 제2장 :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관련 조항 목차〉

(5조)부패방지정책 및 시행 (6조)부패방지기구 (7조)공공부문 (8조)공무원행동강령 (9조)공공조달 및 공공 재정관리 (10조)공공보고 (11조)사법부문 (12조)민간부문 (13조)사회의 참여 (14조)자금세탁 방지

- 제3장 : 범죄화와 법 집행(Criminalization & law enforcement)

〈관련 조항 목차〉

(15조)자국공무원의 뇌물수수 (16조)외국공무원 뇌물수수 (17조)공무원의 횡령·배임 (18조)영향력 행사 (19조)직권남용 (20조)부정축재 (21조)민간부문 뇌물 (22조)민간부문 횡령 (23조) 범죄수익 세탁 (24조)은닉 (25조)사법방해 (26조)법인의 책임 (27조)참여와 미수 (28조)인지와 의도 (29조)공소시효 (30조)기소, 재판, 제재 (31조)동결, 압수, 몰수 (32조)증인·피해자 보호 (33조)신고자 보호 (34조)부패행위 결과 (35조)손해배상 (36조)전담기구 (37조)법집행기관과의 협력 (38조)국가기관 간 협력 (39조)국가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 (40조)금융 비밀 (41조)범죄기록 (42조)관할권

- 제4장 :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관련 조항 목차〉

(43조)국제협력 (44조)범죄인 인도 (45조)수형자 이송 (46조)사법공조 (47조)형사절차 이관 (48조)법집행 협력 (49조)합동수사 (50조)특별수사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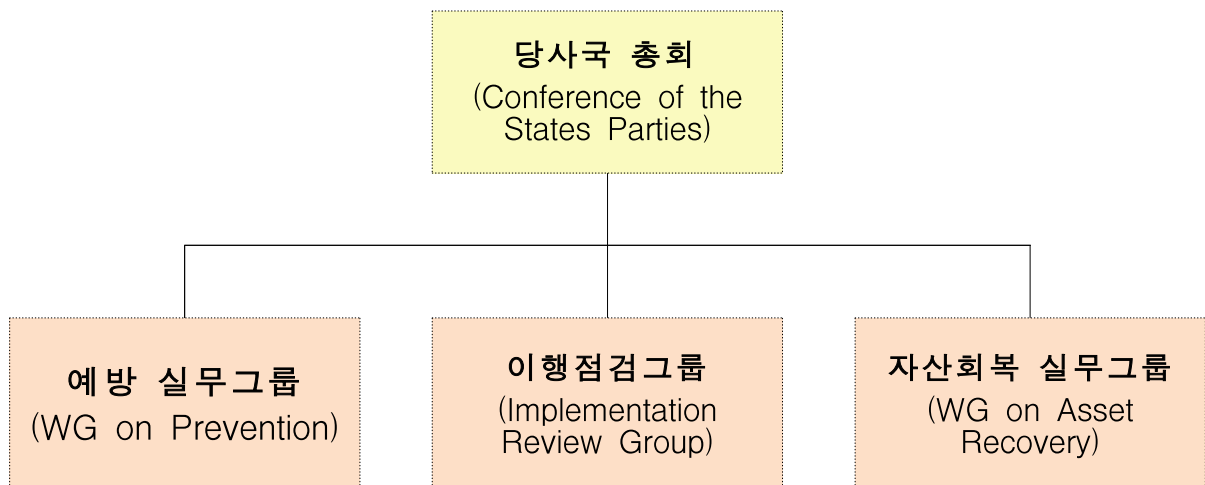
- 제5장 : 자산회복(Asset recovery)

〈 UN반부패협약 관련 조항 〉

(52조)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적발 (53조)재산의 직접회복 조치 (54조)몰수 관련 국제협력을 통한 자산회복 체계 (55조)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56조)특별 협력 (57조)자산의 반환과 처분 (58조)금융정보기관 (59조)양자·다자 협정

○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

- 기구 구조도



- 점검 체제(Review Mechanism)

- 1단계(phase)는 2사이클(각 5년)로 구성

〈 UN 반부패협약 점검 체제 〉

(첫번째 사이클) UNCAC 제3장(Criminalization and law enforcement)과 제4장(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이행에 대해 점검

(두번째 사이클) UNCAC 제2장(Preventive measures)과 제5장(Asset recovery)의 이행에 대해 점검

- 점검대상 국가는 매 사이클 초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점검 국가 또한 매년 초 추첨을 통해 두 나라가 선정됨(인접국가1, 비인접국가1)
- 요약보고서는 의무 공개, 전체보고서는 점검대상국가 공개여부 선택

※ UN반부패 협약(UNCAC)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방향

-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응

- 본 협약의 이행입법인 「해외부패관행법」의 정비를 통한 고도의 반부패 인프라 확보 및 청렴계약제와 같은 제도적 구축·보완을 통한 본 협약의 적극적 적용

- 민간차원의 정책적 대응

- 민간영역(기업, 시민단체 등)이 윤리경영 강화를 통해 본 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뇌물 관련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 나아가, 시민단체 활동의 강화를 통한 투명성의 확보가 병행적으로 추진 필요

※ 현장 기록



[Session4] UNODC(유엔 마약범죄국) 기관 방문

6. 출장 소감

- 반부패에 대응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국가 또는 기업의 반부패 문제 발생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손실외에 국제무역시장에서도 퇴출되게 되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반부패에 대한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우수한 제도를 갖추고 있음. 문제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아직도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문제임
- 기품원도 내외부 공익신고제도, 청렴마일리지제도 등 다양한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군수품 품질보증업무(검사 권한)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이미지와 종종 발생하는 군수품 관련 비리발생 문제가 근본적으로 기관의 이미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됨. 이는 반부패에 대응하는 노력이 군 관련 기관들의 상호 협조적이면서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단시간이나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출장 시 타 공공기관 감사업무담당자와 동행 출장으로 인적 네트워크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업무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됨

7. 발전방안(시사점, 동분야 차기출장 시 고려사항)

- 반부패에 대한 대응 문제는 선진국일수록 지속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 또는 우리 기관도 각종 제도 발굴 및 개선을 통하여 부패방지에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7. 획득자료 목록

순번	관련분야	자 료 명	주요내용	발행처
1	반부패·분야 (운영지원)	강의 자료	생략	IACA등

8. 기타

- 별첨 : 1. 교육이수증
2.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직접 입력 완료)

별첨 1. 교육이수증



별첨 2.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소 속	감사실	직 급 (직위)	책임연구원	성 명	ㅇㅇㅇ
공무 출장지	기 간	'15.6.10. ~ 6.18.			
	출장지	오스트리아			
항 공 운 임	적용 등급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			
	* 정액운임	1,725,000원			
	* 청구금액	1,725,000원			
마일리지 이용정보	* 기존 마일리지	0			
	* 신규 적립 마일리지	이용 항공사	대한항공		
		적립 마일리지	10,265(5,134+5,131)		
		시스템 입력여부	직접		
	* 금번 사용 마일리지	활용방법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		
		사용 마일리지	0		
		시스템 입력여부	-		
* 총 마일리지	10,265				
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15 년 7월 14일 신 고 인 성 명 ㅇㅇㅇ (인)					